

광주광역시서구농가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

I. 제안이유

- 농가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는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을 매년 농림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으며,
- 농업경영자금이 필요시에는 농협으로부터 저리(5%)로 대출하고있으므로 농가소득금고 운영의 실효성이 없어 농가소득금고 운영관리조례를 폐지하고자 함

II. 주요골자

- (시행일) 본 폐지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함
- (다른 규칙의 폐지)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광주광역시서구농가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 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.

III. 검토의견

- 본 폐지조례안은 농가소득의 육성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도시근교 농촌의 저소득 농가에 대한 소득증대를 위해 제정하였으나,
- 1995년 이후 현재까지 융자실적도 없을 뿐 아니라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을 매년 농림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.
- 그리고 현행 조례 제5조(융자한도액 및 이율)에 보면 “융자한도액이 농가 당 3백만원 이내로 총 사업비의 70%를 초과할 수 없다”고 규정되어 있는 반면, 농업협동조합에서는 연 5%로 개인 당 1,500만원까지 대출을 하고 있으므로 농가소득금고 운영의 실효성을 감안하여 볼 때 본 조례 폐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.